

제427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9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5)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0)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7)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9)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9)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6)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0)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9)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9)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3)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1)
-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0)
-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4)
-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1)
-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5)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6)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8)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6)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203169)
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9)
 2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7)
 2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9)
 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7)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1)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7)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1)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8)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8)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6)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8)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6)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8)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5)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9)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4)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4)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4)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6)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0)
 4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4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4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4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4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4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5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5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5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5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3)
 5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5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5)
 5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9)

-
5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5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5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6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6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6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6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2)
 6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6)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7)
-

상정된 안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1) …	5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5) …	5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0) …	5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7) …	5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9) …	5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	5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1) …	5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9) …	5
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6)	5
1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5)	5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0)	5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9)	6
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9)	6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3)	6
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1)	6
16.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0)	6
17.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4)	6
18.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1)	6
19.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5)	6
2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6)	6

2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8)	6
2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6)	6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9)	6
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9)	6
2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7)	6
2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9)	6
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7)	6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1)	6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7)	6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1)	6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8)	6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8)	6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6)	6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8)	6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6)	6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8)	6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5)	6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9)	6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4)	6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4)	6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4)	6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6)	6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0)	7
4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7
4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7
4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7
4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7
4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7
4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7
5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7
5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7

5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7
5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3)	7
5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7
5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5)	7
5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9)	7
5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7
5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7
5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7
6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7
6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7
6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7
6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2)	7
6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6)	7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7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7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7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7)	7

(10시05분 개의)

○ 소위원장 서범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상 주제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5)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0)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7)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9)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9)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6)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0)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9)
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9)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3)
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1)
16.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0)
17.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4)
18.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1)
19.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5)
2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6)
2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8)
2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6)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9)
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9)
2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7)
2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9)
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7)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1)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7)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1)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8)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8)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6)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8)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6)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8)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5)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9)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4)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4)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4)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6)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0)
4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4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4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4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4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4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5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5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5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5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3)
5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5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5)
5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9)
5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5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5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6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6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6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6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2)
6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6)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7)

(10시06분)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8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6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유재성 경찰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은 집회·시위 소음 기준과 혐오표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총 19건의 제·개정 법률안입니다.

입법을 통해 국민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1항부터 4항과 관련된 소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권영세·윤건영·엄태영·강대식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권영세 의원안은 소음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윤건영 의원안은 주최자 및 참가자의 준수사항으로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소음 기준을 법률에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엄태영 의원안은 소음 기준을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반복성에 관한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 그리고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강대식 의원안은 소음 기준을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및 반복성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 도로에 천막·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규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시면 권영세 의원안과 윤건영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24년 11월 25일에 법안소위를 한 차례 거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가변 항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윤건영·엄태영 의원안, 안 제2조·제16조·제18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혐오표현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 그리고 집회·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1차 소위원회 논의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나왔던 의견들로는, 일단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집회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참가자들의 발언을 제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혐오표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 혐오표현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 자체를 사전에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당장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경찰관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둘 필요가 있다는 이상식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지하는 것은 반현법적·반민주적인 개정이다라는 김상욱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또 이러한 혐오표현들은 개별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김종양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 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용혜인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적대적 표현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금지행위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다음 조문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걸 전체적으로 1항부터 4항까지 설명을 다 하고 정부 측 의견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하나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다 듣고……

○**한병도 위원** 오늘 처음이고 그러니까 그냥 죽 한번 스크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서범수** 예, 그러시지요. 다 전체적으로 1항부터 4항까지……

○**전문위원 나아정**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하고 한번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나와 있는 개정안의 각 주요 논점들을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번입니다.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지·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소음·진동, 혐오표현을 통해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금지·제한 사유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1차 소위 논의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참가자들의 발언에 대한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집회 자체에 대한 규제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용혜인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고 소음·진동, 혐오표현으로 축소하는 것은 법안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동만 위원님의 의견, 사생활의 평온 부분이 보편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채현일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민의 거주의 평온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혐오표현으로 인해서 사전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밖의 방법으로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되는 경우가 배제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번입니다.

현행 대통령령에서 소음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권영세 의원안은 법률로 상향하되 현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자는 내용이고, 윤건영 의원안은 현행 대통령령보다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도에 대한 기준 외에 지속성·반복성을 추가하자는 강대식 의원안 그리고 음성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강대식 의원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1차 소위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소음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면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지만 탄력적으로 집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동만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상식 위원님의 의견, 현행 시행령 규정이 명확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소음 기준을 가급적 완화할 필요가 있다,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행령에 두는 것이 적절

하다는 김상욱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음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김종양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소음 기준이 일상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용혜인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명확성 측면에서는 법률로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집회·시위 소음 기준에 지속성·반복성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은 소음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소음의 지속성·반복성에 대한 규제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소음·진동법도 현재 소음 강도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설정이 어렵고 집회·시위의 소음에 대해서만 강화된 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확성기 등 사용 시 녹음·녹화된 음성·영상의 반복재생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성과 영상을 2회 이상 재생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번, 도로에 천막·현수막 등 설치 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엄태영 의원안인데요. 도로에 천막·현수막 설치하는 경우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도로관리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서 철거명령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그리고 행정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각한 통행 불편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행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법 위반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마번입니다. 2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의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6개월 이하의 징역,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영세 의원안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1차 소위원회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용혜인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가를 감안하고 법질서에 반하는 심각한 침해에 대한 통제력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김상욱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 시간이 경과했고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김종양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음으로부터 일반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입법취지가 타당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행법 법정형 수준을 고려해서 균형에 맞는 법정형을 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22페이지의 박스 안을 보시면 16조 집회·시위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즉 다시 말해서 이 법 집시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4개의 개정안이 모두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법률의 개정 내용을 인지하는 데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와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먼저 가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오표현 관련한 내용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혐오표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현재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나번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사유 추가, 윤건영 의원님 안에 대한 경찰청 의견입니다.

이 부분도 경찰청에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는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이것은 모두 처벌이 가능한데 이렇게 제한을 두어서 ‘소음·진동, 혐오표현을 통해’ 이런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다번 소음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자는 권영세 의원님, 윤건영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집회 현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라번 천막과 현수막 설치 시에 관할 경찰서장이 철거명령을 하고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염태영 의원님 안에 대해서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시설별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및 행정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도로의 관리 권한과 책임이 이원화되는 경우 개정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적시성 있는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마번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권영세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안에 대해서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법정형이 여타 금지행위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개정을 하면 다른 규정 위반에 대한 법정형보다 조금 높아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4항까지는 전부 신중검토지요,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마까지……

○소위원장 서범수 지금 상황은 경찰청 입장에서는 신중검토라는 거네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집회·시위 관련돼서 이 법안 내용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경찰청이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는 점에 대해 말씀 좀 드리면요.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만큼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위력으로 보여 주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회를 할 때는 일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소음은 규제 대상이라기보다는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니까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장기적이고 계속 벌어지는 농성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특정 건물 앞에서 특정인이, 뭐 억울한 사정이야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심지어 라디오 같은 것 틀어 놓고 방송 틀어 놓고 하루 종일 건물을 향해서 스피커를 틀어 놓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당하는 고통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집회와 시위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행진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하는 사람들이 백악관 앞이든 어디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노선을 짭니다. 그래서 집회 주최 측이 제시한 노선을 경찰이 받아들이고 폴리스라인을 친 다음에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적인 정치인들께서 미국은 폴리스라인 넘어가면 아주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하는데 그 전제는 폴리스라인을 치는 주체가 집회 주최 측이라는 게 우리나라랑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집회의 자유를 완전히 허용하고 그것이 백악관 앞이든 국회의사당 앞이든 마음대로 돌게 되자 자기들이 원래 신고한 라인에서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경찰이 자의적으로 ‘여기 이상 오지 마’라고 막는 거랑은 다르다는 점은 있지만 여하튼 행진을 한다는 데 중심이 있고 행진을 하는 동안은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상관없지만 행진을 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서서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제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좀 섞여 가지고 행진을 하면서는 그렇지만 집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이 계속적으로 내는 소음에 대해서도 규제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장을 하면서 몇몇이 관련된 주장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서 한 달씩 두 달씩, 심지어는 이 국회 앞 같은 경우 저 버스는 제가 보좌관으로 있을 때부터 봐서 지금 몇 년째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것들이 현행법상 별문제 없이 계속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전반적으로 제도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권칠승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범수 예.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저도 김성희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부분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1인 시위 형태든 해서 계속하는 경우, 지금 여기 검토 자료에 보면 2회 이상 못 하게 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횟수 제한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편을 엄청 길게 만들어서 재생을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시간 제한하는 방식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영상에 대해서?

○**권칠승 위원** 영상 플러스 소음.

○**박정현 위원** 음성도……

○**위성곤 위원** 음성?

○**박정현 위원** 예, 음성.

○**위성곤 위원** 예, 녹화 또는 녹음되었다는 음성과 영상에 대해서.

○**주호영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두 분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선량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은 좀 막아 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이 무방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 앞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고 다른 쪽에도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는데 기술적으로,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데시벨 규제를 좀 더 한다든지 조금 장치들을 도입해서 정교하게 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형사법체계가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을 붙여 가요. 그러나 보니까 이게 너무 언밸런스한 거예요. 사실 이것 가지고 징역 할 수도 없고 벌금 하면 너무 소액이니까 이걸 좀 올려서 벌금도 벌로서의 어떤 불이익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것 가지고 엄청난 위반이 아닌 다음에 징역형을 선택할 리는 없고 벌금 할 텐데 100만 원, 위반해 봐야 아무 강제력이 없는 이것은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용혜인 위원** 저는 지난번 심의할 때 의견을 다 드려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드릴 내용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셨는지에 대한 고민의 지점들은 이해가 있지만 집회·시위 같은 경우는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한하는 입법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사유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절대금지구역에 대해서 계속 위헌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원, 국회 다 위헌 판결을 받고 있는데 국회가 여기에 추가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그런 위헌이 나오고 있는 흐름에서도 좀 맞지 않다는 점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소위가 논의를 더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용혜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 데시벨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집회의 성격에 따라서 경찰들의 대응 양태가 굉장히 각각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완화해서 대응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규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경찰청이 집회·시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좀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찰청의 신중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다만 도로에 천막 등을 설치했을 경우에 지금 개정안에서는 경찰서장이 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마 대체적인 내

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그러한 무단,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신중검토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는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법 앞에서 무단으로 도로에 천막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관련해서는 아마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모호하다, 경찰청 입장은 그런 거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다음에 다시 한번……

○김성희 위원 이것도 현행법에서 이미 모욕죄를 다루고 있는데 집회하는 도중에 경찰이 저 발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제지를 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경찰도 곤란하고 법 집행이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서 그것은 사회적으로 배척을 할 문제지 경찰이 현장에서 내용 듣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위성곤 위원 집시법에 담아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경찰청 입장도 보면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 예를 들면 소음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자, 또 다른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을 추가하자 하는 부분은 경찰은 시행령으로 충분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오늘은 계속 소위에서 심의·검토하되 다음번에 경찰에서 그러면 앞으로 시행령 내지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집회·시위를 어떻게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밀화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 종합대책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것은 같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소위에서 계속 심사는 하되 다음 법안소위 때는 경찰청에서 집회·시위에 대한 종합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하고요. 보완할 사항은 제가 볼 때는 법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화 개선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경찰청에서 종합대책을 검토하실 때 프로그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집회·시위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순화시켜 나갈 거냐, 헤이트 스피치 같은 경우는 특히 사회적인 압력이 저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만 남깁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 종합대책을 만드실 때 매뉴얼화시켜 주십시오. 추상적인 그런 용어를 가지고 종합대책을 만들어 버리면 현장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매뉴얼화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딱 집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화된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야간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시간 개정 등 소위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서지영·김종양·윤재옥·주호영·강대식 의원안이 제출되었는데요. 서지영 의원안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로 하는 내용, 김종양 의원안은 금지 시간을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로 하고 예외적으로 옥외집회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하고 관저·공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안은 금지 시간을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로 하고 옥외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금지 시간을 설정하고 예외적 허용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강대식 의원안은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한정위헌 결정 등에 대하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잠깐 보시면 옥외집회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라는 내용,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위에 대해서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봤습니다. 세 번째,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감안해서 최소한 0시 이후부터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 집회·시위 문화의 변화, 국민의 활동시간, 취침·기상 시간, 일출시각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결정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에 대해서 옥외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 10조 단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양 의원안은 주민의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조

건을 붙여서 허용하는 내용이고, 윤재옥 의원안은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 주호영 의원안은 예외적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또한 집회·시위의 성격 차이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라번입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서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이전의 현재 결정을 보시면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 23년에는 국회의장 공관에 대해서 과잉금지원칙 위배를 이유로 한정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국회의사당 인근, 법원·헌법재판소와 유사한 수준에서 예외적으로 집회 허용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체계상 일반적인 예외 수준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는 대통령 집무실이 업무공간이라는 점에서 생활공간인 관저와 공관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무실은 3호가 아닌 별도의 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페이지 부칙의 시행일에 관련해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재규정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동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두 분 의원님은 3개월 그리고 세 분 의원님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먼저 가번 시위 금지 시간 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0시 이후에 금지를 하는 게 맞고요. 평균 일출시간이 오전 6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고려해서 0시부터 6시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나번 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또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그 금지를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그런 부분, 의원님 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부칙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의 한정위헌 판결에 따른 위헌 시간대를 포함하는 개정안들은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24시 이후부터 대략 6시까지 조건부의 예외적 허용규정을 두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외적인 허용 자체는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사실 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이런 제한을 입법정책적으로 국회가 결정해둔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지금도 경찰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집회·시위에 대해서 불허 결정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많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법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인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들?

지금 이 문제가 오래된 숙제인데요, 사실은 2010년도부터 헌법불합치가 나와서 이것은 어느 정도 매듭은 지어 가진 지어 가야 됩니다. 지어 가야 되는데, 위원님들 어떤 생각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 이게 지금 가항, 나항 같이 논의하고 있는 건가요?

○소위원장 서범수 예,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집시법 11조 같은 경우는 제가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 취지는 아니지만 같은 조항에 대한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의한 법안은 오늘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똑같은 조항을 개정하는 취지의 안건들은 좀 묶어서 상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발의한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포함해서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제가 과문해서 그런데 언제 용혜인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지요?

○용혜인 위원 제가 2024년 11월에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음 소위 때 같이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용혜인 위원 예.

○소위원장 서범수 다만 이 시간의 문제,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원칙적으로 저도 용혜인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이런 형태로 법률이 고민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한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까지. 왜 제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탄핵 관련되어진 집회에 나왔던 상황들을 보면 결국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그것이 저지되었는데 밤새 하시고 국민들께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으시고 집회를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집회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집회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희 위원 제가 경찰청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간에 확성기애다, 봉고애다 스피커 달고 누구 집 앞에 가서 소리 지르고 ‘나와라’ 그러면 지금 경찰은 제지 할 방법이 없습니까?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치안정보국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시법에 따르면 없습니다. 소음 기준을 넣지 않으면, 소음 기준이 주택에 따라서……

○**김성희 위원** 집시법에 따르지 않고라도, 하여튼 규제는 하시지 않아요? 새벽 2시에 제가 청장님 집 앞에 가서 스피커를 켜 놓고 한 100명 몰고 가서 ‘나와라’라고 말하면 경찰이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인근 소란 등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현장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제지는 되는 거지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예.

○**김성희 위원** 그런데 예전에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이 되던 80년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시위대들이 굉장히 과격하게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경찰들하고 부딪히고 이런 집회를 하면, 밤중에 하면 경찰도 괴롭고 국민들도 괴로우니까 하지 말라는 주장은 알겠는데 지금 2020년대의 야간 집회라는 게, 예를 들어서 철야기도도 그렇고 밤새 108 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3000배, 이런 단체로 모여서 군중의 위력은 행사하지만 남의 잠을 깨우지 않는 것을 굳이 경찰이 단속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광화문에 모여 있는데 모여 있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될 커다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지금도 허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무장한 군중들이 전부 다 야구 배트를 하나씩 들고 누구 집 앞에 가서 바닥을 치고 있으면 그것은 경찰들이 다른 조항으로도 충분히 지금 제지하고 해산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예.

○**김성희 위원** 그런 점에서 저희가 20세기의 룰을 가지고 지금 규제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아까 용혜인 위원님과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금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야간 심야 집회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가변적이어서 헌법불합치를 내린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는 밤새 하더라도 경찰이 전혀 힘들 게 없습니다.

다만 몇십 명이 모여 가지고 인근 학교라든지 이런 데 와 가지고 전혀, 몇십 일을, 몇백 일을 할 경우에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어야 경찰이 금지를 하고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근거를 남겨 달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몇백 일에 걸쳐서 계속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제한한다 이런 조항을 담아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현장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이 법이 없더라도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서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현재로는 없습니다. 집시법상 집회를 신고하고 야간 집회를 하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이 그 집회를 100일 넘었다고 해서 제지할 근거는 없습니다.

○**용혜인 위원** 아니, 집시법 말고도 야간 소음 규제 기준이 별도로 있잖아요, 주간이랑 다르게?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소음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소음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아까 소음법이 나왔지만 집회를 하는 분들은 소음 기준을 잘 압니다. 1시간 내

에 3번을 측정할 때 측정할 때마다 줄이고 측정할 때마다 줄이고 하면 현장 경찰관은 대응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지금 집시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물어보는 게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인근 소란이든지 이런 규정을 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잖아요?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있습니다. 다만 집회 신고를 내고, 720시간 전부터 집회 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면 그것을 보호해야 됩니다.

다만 경범죄 처벌법 같은 경우는 스티커 발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해산 한다든지 체포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를 하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 사항이잖아요. 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신고 사항인데 경찰에서 지금 허가처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조건들을 달잖아요. 흥기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도 다 달고 있잖아요.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인근,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도 야간에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조항은 달 수는 있잖아요.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그것을 제한통고라고 하는데 제한통고도 아주 한시적으로 할 수 있고……

○**소위원장 서범수** 그것 가지고 해결하면 안 되나요?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그것 가지고는 야간 집회·시위를 제한하거나 또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시끄러울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되잖아요.

○**김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하나만 들어 봐 주실래요? 제가 봤던 것들은 안 그런데 실제로 경찰들이 괴로우시고 국민들의 공공의 안녕을 해친 사례가 있어서 하신 말씀일 것 아니예요?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예를 들면 서대문 관내의 명지대학교의 명지체육관 건설 할 때 민노총에서 인원을 더 채용해 달라는 이유로 05시부터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근의 여성 한 분이 5시에 주무시다 말고 잠옷 바람으로 뛰쳐 나와 가지고 너무 시끄럽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음을 측정해 봤는데 야간에 해당되는 65dB이 안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무 예민한 상태라서 자기 스스로 스피커를 빼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스피커 빼려고 하는 그 행위를 제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집회·시위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신고 내고 집회하는 것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만약에 금지 조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금지 조항을 근거로 해서 금지통고를 했고 금지통고를 했는데 그것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처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호영 위원** 제가 의견을……

○**소위원장 서범수** 예.

○**주호영 위원** 물론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의 자유이고 가급적 제한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도 무제한의 자유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당해 보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심야가 아니라도 의사를 충분히 표시할 수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약된다고 보는 것은 저는 너무 남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6시에서 11시까지도, 밤 11시부터 6시까지도 심야 중의 심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면을 취하려고 하는 그 시간대에 지금 허용돼 있는 야간의 소음 기준치도 너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해서 무슨 집회·시위의 자유나 자기의 의사를 하는 데 큰 제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의사를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상대에 대해서 괴롭힘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한 정도의 심야 규제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제한돼 있는 범대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심야 소음 기준을 낮춘다든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일단은 위원님들……

○**박정현 위원** 지금 결정하지 마시지요.

○**양부남 위원** 이것 지금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대체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으려면 소음 기준을 현재보다는 좀 완화시켜야 된다. 이 야간 집회에 대해서 이것을 허용하려면 소음 기준도 변경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도 주호영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데 이것을 한번 경찰 의견처럼 야간 집회 시간대를 두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번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경찰청의, 위원님들 말씀 들으셨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일부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용혜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허용을 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시는 의견에서부터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은 정리를 하되 소음 기준을…… 이것을 완화해야 됩니까, 강화라는 말을 써야 되나?

○**양부남 위원** 표현이 애매하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요. 무슨 말인가……

○**용혜인 위원** 기준 강화지요, 강화.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소음 규제를 예를 들면 50dB에서 40dB로 그 이야기지요?

○**양부남 위원** 그래요, 그 취지이지. 그 이야기이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경찰청 검토의견을 나중에 다시 한번 법안소위 때 내주세요, 이런 부분.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어떻게, 경찰의 입장을 정확하게 한번 봐 주시고.

그다음에 자꾸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들도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하는 게 고질적으로 오래된 집회 있잖아요? 엉망인 장소 가서 관리 안 되고 1년 내내 하는

데 플래카드 걸어 놓고,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것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세요. 자꾸 경찰에서 저것은 귀찮다, ‘문제가 있어’ 해 놓고는 관리를 잘 안 해요. 정리를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한민국에?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그런 고질적이고 오래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집회·시위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정보국장님 이시지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예, 치안정보국장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몇 군데가 있지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예,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취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라고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알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이게 아까 그 종합대책에 포함해서 보는 건가요? 별도로 보는 것은 아니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그것을 다 포함시켜서……

○박수민 위원 종합대책에 포함시켜서?

○소위원장 서범수 예, 포함시켜서. 왜냐하면 이게 집회·시위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 다 포함시켜서 같이 해 주세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예.

○소위원장 서범수 결국은 집회·시위에 관한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법적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 갑시다. 이게 너무 과거에 오래된 법률로 업데이트를 조금씩 조금씩 시키긴 시켰으나 현실하고 안 맞는 규정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각 의원님께서 단락단락별로 법안 발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경찰청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그와 관련해서 법안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좀 빠른 시일 내에.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도 통과 안 되는데……

○한병도 위원 다음에는 다 해야지요. 다음 회의 때는 부칙까지……

○소위원장 서범수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및 10항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동 법률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복원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장이 배석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자율방범대 관련된 소위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희용 의원안과 채현일 의원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정희용 의원안은 자율방범대의 날을 정하고 또 자율방범대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수당 및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채현일 의원안은 연합회와 연합대의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비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현행과 정희용 의원안, 채현일 의원안을 비교한 표이고요.

그 다음 표에 보시면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는 4532개 단체에 9만 4900명입니다.

검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시·도경찰청장이나 시·도지사 등이 요청하는 활동을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포함하고 있고 경비 지원 및 보험 가입 시에 비용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에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비 지원의 범위에 사무공간 임차료를 명시하는 내용 그리고 재해보상금 지급 의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시행령을 보시면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상향할지 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차료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시·도경찰청장이나 시·도지사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현행법에는 현재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수당 지급 요건인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해보상비 지급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개정안들은 현행법이 자율방범대원의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비용 지원 규정만 두고 있어서 완전하고 실효적인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자율방범대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유사 자원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및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를 비교를 했었는데요. 저희 같은 소관이면서 유사한 조직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점도 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체계를 보면 자율방범대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조직으로 봉사활동단체로 규정되어 있고 결격 사유도 범죄경력만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소방서장이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단체로 되어 있고 임명에도 적극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서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점도 있다

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 의견은 넘어가겠습니다.

조문대비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연합회·연합대 설립 기준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조직의 성격이 신고단체로 현재 전국에 중앙회 하나, 시도에 연합회 19개, 시군구에 연합대 276개 그리고 자율방범대 423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합회·연합대를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제한하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개 이상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행정구역과 자율방범대 설립 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 개정안의 효과를 보면 연합대의 경우에 17개소가 폐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경찰서가 259개소고 연합대가 276개소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1개의 경찰서가 있는 곳에 2개 이상의 자율방범대가 있는 곳이 17군데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율방범대 등록이 신고제로 규정돼 있다는 취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면, 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격려할 수 있는 법정 기념일 제정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율방범대가 자발적 주민 참여에 기반한 자원봉사활동 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념일 제정 및 행사 운영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먼저 답변입니다. 이번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운영비·수당·재해보상비 지급 근거 마련하자는 안에 저희는 수용의견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사무공간 비용이나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현장 활동에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 발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번 자율방범대 연합대의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부분입니다.

서별로 1개씩만 두자는 건데 일부 서는 2개, 3개씩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취지가 신고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마다 2개, 3개 있는데 위원님들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정비하는 그런 부분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다면 자율방범대의 날 제정과 관련해서는 수정 수용의견입니다.

법안에서는 11월 2일 날로 하자고 했는데 이날이 경찰의 112의 날입니다, 112 신고할 때. 그래서 이게 겹치는 문제가 있고 자율방범대법 시행일이 4월 27일이기 때문에 4월 27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칙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기재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보상이나 수당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지요? 한번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법사예산과장 이복원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장 이복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돼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율방범대 수당 지급 문제입니다.

저희 입장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자율방범대원은 예방순찰 중심으로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인 의용소방대원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험수당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했고 자율방범대보다는 좀 더 강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할 측면이 의용소방대원 수당은 시·도지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에는 자율방범대 수당 지급에 대한 지급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국가, 지자체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이라는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그러한 점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율방범대 재해보상 측면인데 이것에 대해서 신중검토를 고려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요. 현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행안부 법입니다—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무료로 보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우리 지역에 가면 제일 뜨거운 이슈인데 의용소방대는 오래전에 만들고 법정단체화돼서 어느 정도 수당도 주고 활동비도 주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법사예산과장 이복원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 숫자도 한 10만 명, 9만 명? 8만~9만 명쯤 될 거예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특별법은 2년 전인가 3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 기억에. 그러면 굳이 지금 기재부 과장께서 말씀이 위험수당이다, 아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조금 이 부분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율적입니다. 예방적인 차원이라서 안 됩니다’. 그런데 막상 지역에 가면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활동하는 게. 그러면서 늘상 비교하는 게 자율방범대가 의용소방대는 수당도 주고 이렇게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획재정부법사예산과장 이복원 그런데 평상시 활동은 그렇지만 아무래도 의용소방대원분들이 좀 더 위험적 요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소위원장 서범수 위험적 요소라면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똑같지요.

예를 들면 112 신고해서 아니면 지나가는 강도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보면 다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기획재정부법사예산과장 이복원** 이것도 의용소방대는 좀 더 엄격한 요건하에서……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기획재정부법사예산과장 이복원** 그것은 제가 잘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주호영 위원** 2억 8000 들어간다고 적혀 있네요, 25년도 기준으로.

○**소위원장 서범수** 이것은 자치구 하나지요, 지금. 자치구에 예를 들면……

○**양부남 위원** 의용소방대 위험수당은 어떨 때 지급됩니까? 활동할 때 줍니까?

○**기획재정부법사예산과장 이복원** 예, 1만 3000원 정도……

○**양부남 위원** 아니, 의용소방대에 대한 수당 지급 시기가 어떨 때 지급됩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한 번 출동할 때마다 주지요?

○**양부남 위원** 출동할 때만 줍니까?

○**기획재정부법사예산과장 이복원** 예, 요청이 있을 경우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출동할 때만, 산불 났을 때?

○**기획재정부법사예산과장 이복원**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서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지역에 내려가면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가 하는 역할과 기능은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정부 측 의견처럼 자율방범대가 위험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의용소방대가 비교적 위험도가 좀 높다고 봐야 되지요.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의용소방대는 전부 다 가서 불을 껌지요. 자율방범대도 그러한 진화에 동원됩니까?

○**기획재정부법사예산과장 이복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의용소방대도……

○**소위원장 서범수** 자율적으로 가지요.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위험수당에 있어서 두 단체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약간 무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위험수당이 어떨 때 지급되는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험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출동할 때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법사예산과장 이복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다가 자율방범대는 자치경찰사무다 이런 논리를 또 펼치는데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소방업무가 자치사무지요. 경찰업무는 굳이 방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사무로 되었지만 국가사무예요, 전체로 보면. 그렇다면 그런 논리가 안 통할 수 있다. 소방 자체는 실제로는 자치사무고 경찰은 국가사무인데 국가에서는 그러면 어느 걸 더 보호해 줘야 되느냐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박수민 위원님 말씀……

○**박수민 위원** 저는 법적 근거와 예산 활용은 좀 구분해서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법적 근거는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수당이나 재해보상에 대한 피해.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실제 수당을 주어 가면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경찰청의 집행 과정에서 판단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효과성이 있고 우리가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효과가 있고 그것이 또 경

찰 전체 인력과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이것을 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전체 치안,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도움이 된다 하는 판단 속에서 저는 경찰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도 법적 근거는 있어도 되는데 기계적으로 1인당 얼마 이런 것보다도 위험한 지역, 우범지역이라든지 또 시간대가 다르다든지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해서……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것의 최종 목표는 국민 안전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박수민 위원 그리고 그것을 또 경찰인력, 정규직 경찰인력만 갖고 하는 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이게 순기능이 있다고 봐서 하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일단 경찰이 보실 때는 자율방범대가 효과적인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 또 필요하니까, 경찰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 단체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법정화됐고 그랬기 때문에 경찰 치안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박수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 때인데 얼마 정도, 법적 근거는 마련해 놓고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어떠한 방식으로 쓰면 이게 치안 질서유지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것은 또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예산 확보는 저희가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박수민 위원 그리고 예산도 기계적으로 공공근로처럼 무조건 1인당 수당 얼마씩 나눠 주기보다는……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가 수당이 아니고 실제 활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

○박수민 위원 그리고 지역에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익명성이 높은 도시지역하고 농촌 지역 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저희가 법안으로 다 볼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경찰청 고유 판단에, 세포 조직까지 다 판단을 맡겨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율방범대 운영 기본 방향, 계획 속에서 어떤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논리 구조가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는 법적 근거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 박수민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당을 주려면, 지역사회 안전은 상당히 애매모호하달까,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데 수당을 주려면 이런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 생각도 해 봅니다.

의용소방대의 경우는 불을 끄러 간다, 화재를 예방하고 진화한다, 약간 구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도, 제가 돈을 주지 말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줄 수도 있다. 또 오해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명확성이 필요하다. 사회 안전, 약간 너무 추상적이다. 이것 수당화를 법적 근거로 하려면 요건 자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주호영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자율방범대라는 게 외국에는 보면 커뮤니티 워치(community watch)라고 그래서 우리 동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범죄가 생기면 서로 신고하고 하는 이런 테서 출발한 거여서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마을에 대한 안전을 지키는 그런 자발적인 성격이 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는다는지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필요할 것 같고요. 의사자법에 따른 요건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수당도 논의해야 될 거지만 다녀 보면 제일 요청하는 게 냉난방비 요청입니다. 주로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데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난방비를, 냉방비를 못 구해서…… 난방비를 동별로 거기에 있는 기업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 30만 원씩 내가 결연을 맺어 줬습니다. 자기들이 내서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당보다 더 급한 것이 최소한 냉난방비 정도 지원은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하는 봉사는 시간적인 봉사 이런 것이지 물질적으로까지 냉난방비를 자신들이 내고 시간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당 논의 전에 냉난방비 지원이 먼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부남 위원** 저희들이 수당을 논하는 것은 냉난방비처럼 사무실 운영비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호영 위원** 그런데 그건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양부남 위원** 저도 지역에 가 보면 자율방범대원들의 사무실이 너무 열악해요. 컨테이너 박스에 있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냉난방비에 대한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하고, 그래서 제 의견은 이러한 자율방범대에서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원에 저는 100% 다 동의합니다.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운영비야 들겠지요, 냉난방비도 당연히. 그런데 수당에 있어서는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정리하면.

○**주호영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차장님, 지금 방범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표시가 안 나오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의용소방대는 불나면 불났다, 출동, 불 껐다, 결과가 나와. 방범은 저녁에 4시간씩 순찰하고 돌아다녀도 ‘너희 뭐했냐?’, ‘순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적내’, 없지요. 그래서 방범이라는 게 참 표시가 안 난다, 실컷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많이 피해의식을 느껴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양부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주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굳이 이게, 지금 조금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경찰에서 열심히 해서 이 예산을 좀 확보해 주면 안 되나요?

지금 일부는 주잖아요. 일부 안 줍니까? 아예 경찰청에서……

○**경찰청차장 유재성** 자치단체에서 일부……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에서는 아예……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이 없대요.

○소위원장 서범수 예산을 아예, 이 부분에 대해 항목이 없나요?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교육 자료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예?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우리 경찰청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예산 2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동안 경찰청 뭐 했어요? 아니, 자율방범대에 대한 특별법 언제 만들어졌어요? 2년, 3년 전인가 만들어졌지요?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2년 전, 4월 27일 날?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정단체화 만들었으면 경찰청에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 되지 법만 만들어 놓고 법정단체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전혀 지원을 아무것도 안 해 줬네요, 2억 정도면? 2억이면 그걸 어디 갖다 붙여요?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예산이 12억이 있는데 그 예산이 자치업무가 되면서 자치단체로 넘어간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 실적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게 있나요?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에 들어가는 돈……

자율방범대 누가 전체적으로 관리합니까?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일단은 경찰청과 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이 주무 부처지요?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요? 예를 들면 금방 경찰청은 예산이 2억 정도, 교육이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각 구별로 아니면 광역시나 특별시별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취합한 게 있습니까?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현재까지는……

○소위원장 서범수 관리 안 하지요? 관리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 자료 구체적으로 한번 내 보세요, 그러면.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가 취합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위원장 서범수 취합 가능하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에서 조금 더 검토하는 걸로 하고.

뒤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연합회·연합대 설립 기준을 명확하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한 경찰서에 한 자율방범대만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한 경찰서에 2개 있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것을 완전히 획일화시켜서 한 경찰서에 하나만 하자라는 법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차장님?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 말씀……

○박덕흠 위원 박덕흠 위원입니다.

차장님, 제가 지역에서도 보면 2개 이상이 되면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쪽에서 안 되는 사람이 따로 나가서 설립을 해 갖고, 협회나 이런 걸 설립을 해서 같이 대립되는 그런 구조가 또 되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면. 그래서 이것은 좀 통일되게 각 경찰서에 1개 방범대가 있어야지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조정이 돼야만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가 이게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1개 경찰서에 2개씩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것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 저희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찰서마다 하나가 있는 게 훨씬 더 관리하고 하는 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럴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서로 어느 방범대원은 방범대 해 가지고, 또 저희같이 작은 군 단위는 특히나 또 그래요. 인원도 또 없어. 그렇기 때문에 1개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게 1개 경찰서에 1개가 아니고 2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로 파별 싸움이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러니까 이게 법정화된 것이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하는 이런 경찰서도 있고.

또 지역의 특성상 같은 경찰서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서로 특색이 있는, 그러니까 서로 지역적으로 자기 쪽의 프라이드가 강한 그런 사람들이 두 군데가 있다면 따로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신고제로 있다 보니까 법정단체화했어도 이것을 일률적으로 저희가 하나로 합치거나 이런 걸 못 했던 겁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괴산경찰서가 있잖아요. 괴산·증평을 같이 하는데 군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괴산군, 증평군 이렇게 돼 일단 말이지요. 그러면 방범대 운영하는 것이 경찰서는 하나인데, 그런 특이한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외 적용을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각 군에 하나씩 방범대를 둔다라는 것을 하나 추가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소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양부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동마다 하나씩 있지요? 동에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고치자는 겁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그게 아니고 각 동이면 동에 하나씩, 각 경찰서면 경찰서에 하나씩……

○양부남 위원 현재 그러면 경찰서 하나가 있고 동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읍면동이요.

○양부남 위원 현재 읍면동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지요, 자율방범대.

○양부남 위원 그런데 경찰서에 하나 한다는 취지가 무슨 취지인지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돼서……

○소위원장 서범수 한 경찰서에 어떤 데는 보면 2개의 자율방범 연합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조금 파별 싸움이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양부남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현재 있는 자율방범대는 그대로 두고……

○소위원장 서범수 예, 그대로 두고.

○양부남 위원 이것 전체를 관장하는……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읍면동에도 예를 들면 1개씩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전문위원 나아정 아닙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에요?

○전문위원 나아정 지금 이게 적용되는 것은 시도, 시군구 단위의 연합대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시도가 연합회고, 그렇지요? 시군구가 연합대고. 이 2개에 대해서만 지금……

○전문위원 나아정 예, 적용되는……

○소위원장 서범수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연합회 하나, 그다음에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도 연합대 하나만 하자. 그 밑의 것은 어차피……

○박정현 위원 동별로 있는 거는……

○양부남 위원 그대로 두고요?

○소위원장 서범수 다 자율방범대에서 해서 연합대로 만드는 거니까……

○양부남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게 지금 법정단체화되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을 이때까지 관리를 못 하고 2개, 3개 있었던 이유는 아마 이것을 통합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괜히 딴소리가 나오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찰이 이권에 개입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못 하는 것 같은데……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기서 정리를 해 드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경찰서나 지방청에다가 ‘하나씩 뒤.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

어' 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자율방범대를 관리하기가 훨씬 편할 것 같은데요, 저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현일 의원님 안대로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이것은 그냥 하던 대로……

○소위원장 서범수 그대로 4월 27일로?

○박정현 위원 경찰청의 의견……

○소위원장 서범수 그대로, 그 안대로?

아마 자율방범대에서는 11월 2일로 하기를 원한 모양인데. 그렇지요, 차장님?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자율방범대 총회에서도 전부 다 동의해 가지고……

○소위원장 서범수 원래는 11월 2일 날로……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원래는 11월 2일 날로 원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총회에서 4월 27일로 변경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의 날 4월 27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되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신규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도로교통법 관련 소위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모경종 의원안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현재 합격일 또는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0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재 갱신 신청이 12월에 집중되어서 업무 처리 부담이 높고 민원 대기시간이 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참고자료를 한번 보시면 연도 중에 가장 높은 달이 12월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보통 11월은 두 번째로 높거나 세 번째로 높은 달인데요. 두 번째로 높거나 세 번째로 높은 11월보다도 거의 2배 전후로 지금 12월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같이 하는 경우에 갱신 신청을 분산하고 도로교통공단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개신일을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 개신일이 12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개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 다시 6월에 개신 신청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산점을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 이렇게 개정했을 경우에, 운전면허증을 보시면 개신기간을 만약에 25년 7월에 개신을 했다면 35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신기간이라고 운전면허증에 박혀 가지고 발급을 받기 때문에 과도기인 10년간은 개신 대상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개신기간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8페이지에 있는 부칙 수정안을 보시면 운전면허증에 이미 박혀 있는 개신기간도 함께 경과조치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이 기산점을 생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부칙도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 내신 부분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권칠승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위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종양 의원안은 개인정보를 국외이전 할 수 있는 수권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식 의원안도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2페이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들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국제공조 또는 범죄의 예방·대응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양 의원안과 이상식 의원안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일단 이전의 목적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요. 김종양 의원안은 국제공조, 범죄의 예방·대응을 위한 목적을 기술하고 있고, 이상식 의원안은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현재 제8조의3(국제협력) 부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은 모두 규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개인정보 이전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김종양 의원안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이상식 의원안에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하게 ‘제공·처리위탁·보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3년도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돼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이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3을 보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현재도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종양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이상식 의원안은 6개월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도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돼서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부분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부칙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김종양 의원안하고 이상식 의원안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거의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국외이전 목적의 세부 내용을 두 분이 열거를 하셨는데 전체 다를 열거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자료들인데 외국에, 해외에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목적이 우리는 범죄에 국제적으로 공조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뭔가 너무 포괄적이고. 침해되는 개인정보, 인격권, 기본권에 비해서 요건이 너무 느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범죄 수사·예방 그리고 이러한 것의 국제공조 여기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 교환이 뭔지 국제협력 활동이 뭔지 너무나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희 위원 저도 질의가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지금 보호조치하고 통제장치에 대해서 현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주고받는 것에 대한 보호조치라든지 통제장치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가 국제공조를 하면서 자료를 교환하는 부분은 범인이 외국으로 도피를 했을 경우에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합니다. 그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 사진, 여권 정보 이런 것들이 인터폴로 가는 거지요.

또 외국에 우리가 요청을 할 경우에 적색수배서가 발부되면 범인이, 적색수배자가 어느 나라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때 그 나라에도 개인정보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김성희 위원 그것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인터폴 적색수배에 대해서만?

○경찰청차장 유재성 이게 되면 인터폴 적색수배 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변사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은 또 안 하고 있는데 인터폴 적색수배 하는 경우는 다른 법에 근거해서 개인정보는 사실 실무적으로는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이 이렇게 더 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변사자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지문 정보 이런 것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현재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개인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인터폴하고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김성희 위원님. 지금 현재……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준형 국제협력관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외이전 된 경우는 해외도피사범 관련해서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그 공조 요청의 결과 해당 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주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 외에는요?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준형 그 외에는 주로 해외도피사범 관련한 정보 공유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성희 위원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초국경 범죄 대응, 대테러 업무, 범죄 예방 이렇게 해서 국제공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물론 검토의견이지만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범위랑 되게 다르잖아요.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 적색수배 또는 실종자에 대한 개인정보 정도를 주고받는 것처럼 말씀하시는지에 검토의견이 왜 이렇게 쓰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테러 할 것 같고 범죄가 예방될 것 같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정보가 공유될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거지요.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준형 지금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외이전 되는 경우는 말씀 드린 것처럼 해외도피사범 관련해서 업무 공조, 협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협력을 하고 있고요.

○김성희 위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시니까 자꾸 다른 게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지요.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준형 지금 말씀하신 여러 다른 범죄 유형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외국에 도피를 했다 그럴 때 우리나라에 그 국민의 정보를 요청합니다. 그럴 때 제공하는 경우까지도 종종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위원님들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국제공조를 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것 주고받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국한된 범위 안에서만 주고받아야 되지,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범죄 예방이라는 구실은 너무 막연하다. 오히려 그러면 수사에 국한해서 개인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나오니까, 예를 들면 도피사범 추적·검거라든지 그다음 대테러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막연히 그냥 범죄 예방 등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밖으로 내준다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가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 문구를 다시 한번……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검토 문제보다는 그래서 어느 자료를, 어느 범위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데에다가, 이런 데에서 주고 있습니다’라고 정리해서 한번 보여 주시면…… 저는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는 보는데 약간 애매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정리해서 한번 알려 주시면 저희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되면 어느 정도, 이런이런 이런 기관에 어떤 목적으로 줄 수 있다 정도 한번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논의를 할 때 개인정보가 피의자 검거 등으로 필요가 아예 없어지면 악용되지 않도록 사후 통제 방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잠깐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조문대비표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사실 현재까지도 경찰은 제8조의3에 근거해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해 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근거가 설치가 되니까 개인정보 이전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넣기 위해서 추가적인 규정을 지금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8조의3에 들어 있는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위해서 하는 외국 정부, 국제 기구 등과의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을 그대로 넣어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내용을 추가를 한 거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라서 국제 공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여기에 넣은 거고요.

그리고 수정의견 3항을 보시면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게 조금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현행은 지금 국제협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국제협력에 대한 부분이고 이 조문대비표 김종양 의원안, 이상

식 의원안, 수정, 이거는 국제협력이 아니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야기라서 조금 차원이 다를 수 있다. 그렇지요?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준형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그전에 해외도피사범 송환 관련해서 우리 개인정보를 국외이전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거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더 명확한 법률 규정이 필요해서 그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법적 근거가 김종양 의원님, 이상식 의원님 안을 다 절충해서 전문위원께서 그 목적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확하게 5개 규정으로 저희들이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정안에도 보면 너무 막연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1항에 보면 국제협력을 그대로 살려 놨거든요. 그렇지요?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건 살려 놓고 2항하고 3항에 보면 거기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국제협력 활동, 자료교환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다고, 지금. 그래서 이게 너무 막연하다는 거지요.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양부남 위원 지금 우리가 8조의3 1항과 2항, 3항을 병렬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8조의3 1항은 개인정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수사기관 간의 공조와 협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2항과 3항은 톡 꼬집었어요, 개인정보라고. 그런데 이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막연히 규정하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저도 동감합니다.

○양부남 위원 이걸 똑같은 평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이 항에 넣어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십니다. 차원이 다르다.

○양부남 위원 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국제협력하고 수사상 필요해서 우리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차원이 다른 문제라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서범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범위 확대와 관련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위 자료 보시겠습니다.

송언석 의원안, 김종양 의원안입니다.

송언석 의원안은 형의 감면에 해당하는 범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하고 형의 감면 규정이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종양 의원안의 경우에는 형의 감면에서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고 민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관의 억류·피난 조치의 상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 가입니다.

형의 감면 적용 요건 중 고의·중과실 요건 삭제에 대한 내용은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지만 다만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면책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의 감면 적용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하는 내용은 현행법 제11조의5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범죄와 위험도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의 감면 대상 범죄를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적용하는 내용은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경찰의 물리적 사용에 대한 면책은 현행 형법의 틀 내에서 엄격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고 2022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서 현행 법률과 같이 면책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재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입장에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형의 감경·면제’를 ‘형사책임의 감경·면제’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례로 보면 형의 감경·면제나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의 입법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립된 이론은 없고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재판실무에서는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입법연혁을 보시면 22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현행법과 같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수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책임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양 의원안의 내용인데요. 경찰관이 긴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국가 책임 외에 경찰관 개인이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면제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현재 경찰관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어차피 국가 외에 별도로 경찰공무원 개인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경찰관이 경과실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민사상 책임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의미가 다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 경찰관의 위험 발생 방지 조치 개정 및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찰관의 위험 발생 방지 조치 내용을 개정하고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현행법상 매우 긴급한 경우에 실시하는 억류·피난 조치를 긴급한 경우의 이동 제한과 대피로 개정하는 내용과 위험한 상황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퇴거와 접근 금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긴급한 경우의 이동 제한과 대피에 대해서는 매우 긴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한 경우에도 이동 제한과 대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험한 상황 원인 제공자 퇴거 등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사람에 대한 퇴거와 접근 금지는 해당 사람의 헌법 제10조에 따라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송언석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김종양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일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법률의 변경 사항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먼저 가변 형의 감면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는 형의 감면 요건 중에 고의·중과실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 그리고 적용 대상 범죄를 삭제하는 부분, 이 부분이 되면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인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또 다른 엄격한 요건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경우, 두 번째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세 번째 직무수행의 필요최소성 이런 요건들을 충족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경찰관 남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번 위험 발생 방지 조치 개정 및 신설, 다번 부칙에 관해서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경찰관들이 업무를 하는 데 보호하려는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형의 감면 규정 적용 대상에서 고의·중과실까지 삭제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 현행법의 제한적인 범죄 외에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신설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에 이러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 역시 과잉보호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사상 책임에 있어서도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지요. 경과실의 경우는 전문위원 의견처럼 이러한 국가 배상의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 규정도 필요 없는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억류·제한 조치는 긍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

○**박정현 위원** 저도 양부남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실제로 경찰들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법 집행 과정에서 요즘 위낙 대립의 상황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시위 같은 경우에 과도한 진압의 문제가 있고요. 실제 2023년도에 광양에서 발생한 노조 시위 진압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불과 작년에도 노조 집회에서 노조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물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면·면책을 통해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세부적인 사항들을 더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한병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병도 위원 경찰 현장도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정말 이상한 범죄, 예측 불가능한 범죄, 아주 폭력적인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대한 공감대가 국민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확장될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출지 이것에 대해 이번에 법안 발의를 했으니까 다음 심사할 때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하고 다음 심사에 함께 고민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저도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인 경찰행정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너무나 경찰의 적극적 행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 걱정들이시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적극적인 조항 때문에 경찰 현장에서 우리 경찰관들이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사례를 들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게 중요할 수 있는데 특히 경찰의 공권력 과잉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께 피해를 입혔다 하는 정도의 자기반성부터 하고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는 게 아마 맞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이 안에 대해서는 다음 소위로 넘기도록 하여 다시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자료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이 조항하고요.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개정 및 신설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오케이를 하시는 겁

니까?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칙은 3개월?

○경찰청차장 유재성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종양 의원님이 3개월 하셨기 때문에 3개월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일단 그러면 가항 면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험 발생 방지 조치 개정 및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칙도 3개월입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4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소위 자료 보시겠습니다. 임호선·이달희·허성무·양부남 의원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제정안들은 실종된 성인에 대해서 신고·발견·복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현재 경찰청은 실종성인을 가출인으로 분류해서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신고 접수하고 추적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지금 20개~3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실종성인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 그리고 실종성인의 신고 및 조치에 대한 사항, 특정 실종성인 또는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활동,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이나 유전자검사 등을 포함한 발견을 위한 활동들 그리고 실종성인 발견 시의 조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사이의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개인위치정보·이동경로정보 요청 대상을 임호선·이달희·허성무 의원안에서는 특정 실종성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양부남 의원안에서는 실종성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호선·이달희·허성무 의원안의 경우에는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처해 있어 긴급한 발견이 요구되는 특정 실종성인이 대상이고 양부남 의원안에서는 실종성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성무 의원안에는 신원불상변사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신고 그리고 발견활동, 복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7페이지에 보시면 유사 입법례로 현재 실종자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실종성인의 발생 건수가 연간 약 7만 건이고 실종신고가 해제되지 않은 건이 연간 300~800건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인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 요청, 유전자검사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실종아동과 실종성인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동은 국가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은 반면에 성인은 스스로 소재와 행방을 외부에 알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모든 경우에 국가가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성이 높은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제정안 사이에는 개인위치정보 요청 대상을 특정 실종성인에 한정할지, 모든 실종성인에 허용할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실종성인의 신속한 발견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동 제도가 타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시도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보 등의 제공 요청 규정은 대상 기관별로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대상 기관과 대상 정보를 각각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관계기관의 협조 조항은 관계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채 협조 요청이 가능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정보 공유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위해서는 대상 기관별로 요청이 가능한 정보와 협조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포괄적으로 규정한 입법례가 실종아동법률이고요, 요청이 가능한 정보를 구분하여 규정한 입법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그렇게 각각의 입법례들은 따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칙부터 조항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게 지금 제정법이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제정법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일단 한번 훑어봅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위원 나아정** 총칙 부분은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임호선·이달희·허성무 의원안의 경우에는 실종성인의 개념 표지에 소재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것 외에 생명·신체의 위험 우려와 소재 확인 필요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양부남 의원안에서는 실종성인을 소재 또는 생사를 알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종성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및 특정 실종성인,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 조속한 발견이 요구되는 사람을 정의하는 등에 있어서 임호선·이달희·허성무 의원안과 양부남 의원안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호선·이달희·허성무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실종성인을 구분하는 것은 성인의 자기결정권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양부남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념 정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종성인의 범위에서 체포·구속·구인대상자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호선·이달희·허성무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실종성인의 범위에서 체포·구속·구인대상자를 제외하는데 이는 영장주의를 고려하여서 제정안에 따른 발견수단이 수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공통적으로 임호선·이달희·허성무·양부남 의원안에서는 일부 장애인과 치매환

자를 실종성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가 등의 책무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법률 체계상 기술적으로 들어간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책 시행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함께 규정한 것과 달리 이 제정안에서는 경찰청장을 관련 정책 시행의 단일 주체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족 지원 등 복지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실종아동등과 실종성인 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정책 수행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조문대비표에 총칙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3페이지, 다입니다.

여기에는 실종성인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과 임호선 의원안의 경우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통합·분석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호선 의원안 제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실종성인의 신속한 발견 및 복귀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조문은 24페이지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 및 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실종성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당신고 및 혐위신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할과 관계없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가 보다 신속하게 접수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신고인으로부터 피신고인의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는데요 적극적인 자료 수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정안은 피신고인이 실종성인 그리고 특정 실종성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특정 실종성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임호선·이달희 의원안입니다.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력 사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피신고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에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실종성인이나 특정 실종성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정보 결정권 부당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부당신고·혐위신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36페이지, 신고 접수 이후에 발견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활동과 관련해서 임호선·이달희·허성무 의원안에서는 탐문 조사, 실종성인의 소재·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 경찰견 등을 활용한 수색 등

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성무 의원안에서는 실종성인 발견을 위한 출입·조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실종성인의 주소·거소 및 실종성인이 있다고 의심되는 장소의 소유자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의원안에서는 실종성인 발견을 위해서 개인위치정보·이동경로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특정 실종성인 발견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에 대한 규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검토의견의 표를 보시면 현재 발견을 위한 활동으로 출입·조사와 개인위치정보·이동경로정보 등 제공 요청 이런 부분들의 대상을 특정 실종성인에 한정할지 모든 실종성인에 대해서 적용할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실종성인 발견을 위해서 경찰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동 제도로 인해서 실종성인의 신속한 발견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타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시도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서 각 활동 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호선·이달희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특정 실종성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허성무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출입·조사 같은 경우에는 실종성인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이나 이동경로정보 제공 요청은 특정 실종성인에 대해서만, 양부남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발견 활동에 대해서 실종성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조문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설명드렸던 특정 실종성인 발견을 위한 활동이 임호선·이달희 의원안 같은 경우에 다음 장 50페이지부터 쭉 들어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임호선·이달희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도 특정 실종성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함께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실종성인 발견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유전자검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장입니다.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의 가족 등의 동의를 얻어 실종성인이 실종 전에 착용하였던 물건 등에서 검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취의 요건, 출처 등에 일부 차이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허성무 의원안 같은 경우에 특히 채취 요건은 신원 확인을 위하여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출처도 변사체에서도 채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더 특이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사기관의 장(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의 유전정

보 데이터베이스를 변사자에 대한 유전자검사결과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실종성인의 생사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려는 것으로 임호선·이달희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견되지 않은 실종성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가능한 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좀 전에 실종성인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변사자에 대한 유전자검사결과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변사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결과 데이터베이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유한 데이터베이스고 혀성무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신원불상 그리고 실종성인의 유전자검사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신원불상 변사자에 대해서 유전자 채취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서도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혀성무 의원안은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유전자검사결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 근거도 이 법에서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체계상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변사자와 검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유전자검사대상물 및 검사결과 폐기 그리고 검사 결과 기록의 열람, 유전자정보와 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전자검사를 마쳤을 때 실종성인의 생사를 확인한 경우 등에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폐기하도록 하고 임호선 의원안은 유전자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유전자검사결과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전자검사결과 정보의 보관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외에는 제정안의 유전자검사의 실시, 검사대상물·유전자정보의 폐기, 검사기록의 열람, 유전자정보 및 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등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후에 유전자검사에 대한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 조치 그리고 발견을 위한 활동 그다음에 발견 시의 조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박덕흠 위원 몇 페이지예요?

○전문위원 나아정 77페이지입니다.

실종성인의 발견 시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종신고 사실과 신고인 및 신고사항을 실종성인에게 알리고 실종성인의 복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이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는 실종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예방센터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이 심신미약의 상태(허성무·양부남 의원안) 등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인에 대한 통지입니다.

실종성인으로부터 복귀 여부 등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그 가족 또는 신고인에게 발견 사실 등을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성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인에게 실종성인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이외 어떠한 정보도 알려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종성인의 등록 해제와 관련해서 실종성인이 발견되어서 복귀되는 등 해당 실종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정안이 실종성인 발견 시 경찰관서의 장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신고인에 대한 통지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종성인 복귀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종성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실종성인의 소재 또는 그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종성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제정안은 실종성인이 발견되는 등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실종성인 등록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부터 5년간 보관하되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견 시 조치에 대한 규정이 그 이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실종성인 발견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임호선·이달희 의원안은 자료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등 요청 대상 기관을 법률에 구체화하는 경우 원활한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할지 아니면 열거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이 91페이지의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위치정보 등을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경로정보를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 대해 이달희·허성무·양부남 의원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에 임호선 의원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임호선 의원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반면 허성무 의원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을 위한 것이 아닌 부당한 목적이나 허위의 내용으로 실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임호선·허성무·양부남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칙 및 과태료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정안별로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벌칙 수준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체계 정합성 등을 위해서 유사 입법례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벌칙 규정을 참고해서 처벌 수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제정안의 부칙에 대한 내용이고요.

임호선·이달희·허성무 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양부남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의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고생하셨습니다.

제정법이라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이것 공청회 안 했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아직 안 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직 안 했고.

경찰청 의견 말씀하시기 전에 양부남 의원님도 내셨기는 내셨는데 여기에 대한 경찰의 실익이 뭡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특히 실종아동에 관한 법률은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경찰청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두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걸로 돼 있고 이 부분은 또 경찰청장만 하는 걸로 돼 있던데.

○**경찰청차장 유재성** 실종아동법에 의해서는 실종아동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신속하게 찾게 돼 있고요. 그런데 성인 같은 경우도 좀 긴급하게 찾아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성인 같은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출한 경우도 있지만 또 범죄에 연루돼서 신속하게 경찰이 찾아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법에 의해서 위치추적이라든지 각종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범죄와 연루된 실종성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말씀하시지요.

○**양부남 위원** 제가 이 법을 제정안을 발의했고 저 혼자 한 줄 알았는데 여러 의원이 하셨네요.

제가 이 법을 발의한 배경은 정부안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보다 보니까 실종돼서 애타게 한 부모가 가족을 찾다가 결국은 죽은 뒤에 그 죽음을 확인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법안을 보면 특정 실종 신고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종 신고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정법률안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은 저와 다르게 이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대상자를 특정 실종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이 법의 대상을

특정 실종인으로 제한을 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법이 만들어진 원래의 취지가 반감됩니다. 지금 이 법 정의규정에 특정 실종인이라는 것은 신체·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고 긴급한 구호 요청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지요? 범죄사건이나 사고나 재난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 법률이 없어도 경찰이 기존에 있는 수사권을 발동해서 얼마든지 실종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런 제한된 범위에서 이 법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 상정했던 것처럼 단순한 실종인…… 지금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납치가 됐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가 됐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신체·생명에 대한 위험한 상황이라고 상정이 되겠습니까?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법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소재는 영원히 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발의한 목적은 이런 신체·생명 위험, 긴급성이 아닌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소재가 불명이 된 성인을 대상으로 그 소재를 탐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고 경찰청 의견도 그렇고 그 사람, 실종된 성인이 나의 소재가 확인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를 부작용으로 들고 있는데 제가 발의한 법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복귀 안하도록 되어 있고 그 소재를 알려 줬을 때의 처벌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신체·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고 긴급한 구조 상황에서 소재가 탐지되지 않는 사람을 하는 법이 아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든다면 만들 필요가 없다, 기존의 수사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제가 이 법을 입법한 목적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종성인의 규정을 이렇게 하고 이 법이 꼭 통과돼서……

이 자료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매년 삼사백 건이라고 했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찾지 못하고 소재를 탐지 못 해서 애태개 일생을 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가가 하는 게 뭐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찾는 게 일이지요. 그리고 찾았는데 돌아가기 쉽으면, 제 법률안에 있습니다, 알려 주지 말라고.

이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법을 검토해 주시고 경찰청도 실종성인에 대한 이 법률의 취지를 잘 이해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 실종인이라면 법 만들 필요 없어요. 전원 사건 사고에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수사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 법안 발의의 취지를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다른……

○한병도 위원 적극 공감하고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를 보니까 연간 7만 명 정도의 실종성인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게 통계 같은 게 있나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비자발적 의사……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아니면 어디가 많나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고령자, 치매 이런 게 있나요? 어느 분야가, 어떤 분들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건지 아니

면 장애인이나 치매 이런 분들이 많은 건지.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생활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실종아동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18세 미만의 아동 실종, 그다음에 지적, 자폐, 정신질환자 그리고 치매환자 이것은 기존의 실종아동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한 1년에, 지난해 기준으로 4만 9000명 정도가 접수됐고요. 그중에 한 99.7%가 확인이 됐고……

○한병도 위원 아동이 아니고 여기 7만 명의 실종성인……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실종성인은 지난해에 7만 1000명 정도였고 그중에 한 99.7%가 확인이 됐고요. 남아 있는 게……

○한병도 위원 아, 99.7%는?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예, 그렇습니다. 아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총 누적으로는 지금 실종성인이 확인 안 된 인원이 한 6930명 정도가 남아 있고 아동 등은—치매환자까지 포함해서요—한 1617명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한병도 위원 그래도 좀 논란이, 아까 검토의견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소재 파악하는 등의 조항이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 침해 소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특히 지적발달장애인, 고령자 여기서 다수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있는 상황에서 입법의 필요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지금 제정법이잖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제정법은 보통 저희들이 통상 공청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청회를 빨리 한번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양부남 의원님께서 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다 말씀하셨고요. 아마 경찰청 입장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결이.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치매환자, 장애인 다 빼고 순수하게 실종성인만 2023년도에 7만 4000건 정도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해제된 게 842건.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 못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만드는 취지는 취지대로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절충할 것이나 하는 부분이 우리한테 남아 있는 건데 이것은 소위에서 공청회도 한번 열고 소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일정을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했다가 3시 반에 속개하는 걸로……

경찰청은 이제 다 마쳤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마쳤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고생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서범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소방청 이영팔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안녕하십니까?

소방청차장입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소방청 소관 법률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소방청 법률안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기존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위 자료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점식 의원안은 현재 65세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 70세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양부남 의원안은 정년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춘생 의원안은 정년을 70세로 법률에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런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고령화로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의용소방대원의 총인원이 줄고 있는데 61세 이상 인원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소방청은 당초 업무의 난이도를 감안해서 소방대원의 연령 제한을 두었지만 소방대원의 임명과 해임 그리고 업무 배분을 통해서 그 대원의 임무 수행 적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을 상향해도 업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의 필요성,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다음 3페이지에서 개정안의 내용과 또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점식 의원안과 양부남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조례에서 70세로 정하거나 아니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지역 여건 변화 시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형평성 측면에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다는 측면에서는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춘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70세 정년을 규정하는 내용인데요. 전국적으로 통일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소방청이나 자치단체의 운영 재량이 축소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나번입니다.

의용소방대원 활동 공간 제공 근거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시·도지사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현행법 제14조에는 이미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위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근거해서 전체 의용소방대 중 80.5%인 3205개의 의용소방대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서 소방서 또는 공공기관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비율도 81.4%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규정을 가지고도 사무공간 제공의 근거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비 지원 조항과 별도로 사무공간 제공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할지 여부는 유사임무를 수행하는 단체와의 형평성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제도를 관리하는 행안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보다 잘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 특례의 기본적인 규정 방식에 맞추어 독립 조문으로 구성하고 현행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무상사용 특례와 함께 규정하는 등 법문을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 이영팔** 먼저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과 관련한 가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또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의 그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 주시는 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시도의 의견을 좀 더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미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시도 의견을 좀 더 충분히 수렴하고 또 저희

들 입장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여기서 결정하지 말자고요? 조금 더 시간을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위원장 서범수** 그동안 뭐 하셨어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지금 시도에서도 각 도 단위와 그다음에 특광역시 단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각각 운영하다 보니까 의견들이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왜냐하면 특수성을 인정할 것이나 아니면 시골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한 소방서에 의용소방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 정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몇 명입니까?

○**소방청차장 이영팔** 정원이 40명, 30명 이렇게 해서 각 안전센터별로, 소방서별로 나름대로는 정원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원은 책정되어 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늘리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이것을……

나까지 듣고 이야기합시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나번 의용소방대원 활동 공간 제공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활용 공간 제공 관련 사항도, 사무공간의 제공 등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 관계로 중앙부처에서는 행안부 또 지방자치단체 시도의 의견을 좀 더 들어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시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 후에 별도로 정리해서 이 사항 또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관계부처 의견은 소방청에서도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 행정안전부도 의견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의견이 없음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거랑 다른 건가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원칙론적으로는 저희들이 법률을 마련할 근거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근거에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시도에 공간이 제공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의견을 좀 더 수렴해 보고 좀 더 매끄럽게 협의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법안소위에 심사하러 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견 수렴을 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고 다시 미뤄 달라는 건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방청 입장에서 내지는 행안부 입장에서는 의견이 없겠지요. 왜? 시·도지사한테 맡겨 버리니까 의견이 없겠지.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9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의견 없음’, 지방자치단체라면 소방본부만 이야기를 들은 겁니까? 정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은 안 듣고 소방본부장들한테만 의견을 들은 거예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관할하는 행안부하고 의견을 좀 더 조정, 조율하거나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의견 없다고 나왔는데……

○**용혜인 위원** 세부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이게 시·도지사가 사무실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 법안 발의 내용이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시·도지사를 관할하는 행안부에서도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더 이상 저희들이 미룰 게 있지요?

그리고 소방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용소방대가 소방청에서도 관련되어 있고 이게 다 소방을 돋는 일인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의용소방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소방청?

○**소방청차장 이영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건과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양부남 위원** 아니, 사무실 공간 건이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활동 공간을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찬성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양부남 위원** 찬성하면 법을 통과를 시켜야지 다음에 뭘 알아 오겠다는 겁니까?

○**소방청차장 이영팔**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양부남 위원** 뭘 알아 오시겠다는 거예요? 알아 올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합리적이면 다음으로 미룰 것 아닙니까? 뭘 알아 오시려고 그래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은 도 단위에서는 도청 건물에 저희들 소방본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 도……

○**양부남 위원** 지금 현황을 다 알고 계신가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무실이 지금 기존에 소방서의 한 공간을 쓰고 있어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맞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에 내려가 보면 소방서 자체도 공간이 부족합니다. 소방서도 공간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공간에서 세 들어 살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시·도지사가 비용을 줄 수 있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시·도지사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무실을 어딘가 공간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주려고 우리가 법을 마련했는데……

지금 소방청 소속이 맞아요, 본인이? 뭘 더 알아 보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의용소방대 사무실 현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다면 이 법을 만들면 나중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시·도지사의 책임으로 넘어가는데 굳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소위원장 서범수** 그 단체의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못 들어 봤다 이 이야기지요, 소방청?

○**박정현 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지방자치단체……

○**양부남 위원** 소방본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서범수** 팔호 치고 ‘소방본부’로 되어 있었어요.

○**박정현 위원** 소방본부만 되어 있어서……

○**소위원장 서범수** 거기 의견을 못 들어 봤다 이거지요.

저는 소방의 입장이 좀 그려해요.

의용소방대라는 게 소방서 직속으로 되어 있지요? 협조 단체로 되어 있지요? 법정단체로 되어 있지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소방서 직속으로 되어 있고 본부는 본부 단위로서 시도에……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소방은 국가직입니까, 지방직입니까?

○**소방청차장 이영팔** 신분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국가직으로 되어 있지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의용소방대의 모든 활동과 책임 범위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또?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시·도지사가 예산, 경비를 다 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적인 논의를 한다는 게 뭔 얘기예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저희들 근본 취지는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도하고 조금만 더……

○**박덕흠 위원** 아니, 시도에서야 당연히 돈 안 주려고 하지.

○**소방청차장 이영팔**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박덕흠 위원** 협의를 하면 어떻게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시·도지사하고 뭔 협의를 해요?

○**소위원장 서범수** 의견을 들어 보겠지요.

○**박덕흠 위원** 협의할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못 주겠다. 그것뿐이 더 있어요, 협의라는 게?

○**소방청차장 이영팔** 갑자기 법률이 통과돼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일단 알려 드리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있게 되면 추후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라는 알림이라든지 인폼(inform)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시도에서 할 것 아니에요.

소방청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뭘 그래요?

만들어지면 소방청은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어쩔 수 없다라고 오히려 평계 대는 게 낫지 거기서 협의를 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소방청은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이해가 안 되네. 그렇지 않아요?

○소위원장 서범수 근본적으로 제가 조금 의문이 돼서……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아까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소관은 소방청이고 경찰청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예산, 복지 신경 안 쓰고 지방자치단체에 다 맡기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나는 봐요.

소방에서 정말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뭔가 복지 차원에서 해 준 게 있나요? 있습니까?

○소방청차장 이영팔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지방에 있는 의용소방대에 지원하거나 내려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다 주든지, 왜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지원도 안 해 줘요?

○박덕흠 위원 그때는 중앙이 중앙 소속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중앙으로 다시 온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일단 알았습니다.

그런데 양부남 위원님 말씀도 맞으세요.

그리고 이 사항, 지금 첫 번째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양부남 위원님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도 시도에 물어봐야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두 번째, 의용소방대원 활동 공간 제공 관계 관련해서 그러면 다음 법안소위 때 분명히 이것을 취합해서 결정을 합시다, 의견 수렴해서 가부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저희들이 소상히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 소방청 입장은 정확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의견 들으면 안 한다 할 거야. 반대가 오겠지 뭐, 한다 하겠어요? 그럴 때는 소방이 더 곤란하지.

○양부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더……

○소위원장 서범수 예.

○양부남 위원 그러면 시·도지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시·도지사가 돈 못 준다고 그러면 그때 소방청은 무슨 의견 내렵니까?

○소방청차장 이영팔 저희들 의견 수렴보다는 일단 사전에 미리 알려 드리고 협의 개념으로 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시·도지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도지사가 ‘우리 돈 없어서 못 줘’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법률안에 대해서?

둘 중의 하나니까 돈 안 준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시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만일에 의용소방대 사무공간에 대해서 지원 부분이라든지 별도로 설치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로서는 뾰족하게 지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요. 소방이 말을 못 하니까 우리가 법률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용혜인 위원** 그래서 가변이야 그렇다 쳐도 나번은 이번에 통과시켜도 무방하지 않겠어요?

○**양부남 위원** 나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시·도지사가 돈 안 준다면, 그것을 우리가 대신 해 주는 건데.

○**박덕흠 위원** 오히려 소방청이 더 좋지. 그러니까 소방청에서는 반대를 했고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 주면 오히려 훨 나아요. 그렇게 하면 돼.

○**양부남 위원** 그래요. 이 법은 통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합리적일 것 같아요.

○**박덕흠 위원** 정년 연장도요……

먼저 말씀하세요.

○**양부남 위원** 제가 정년 연장도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정년 연장도 새로운 의용소방대원을 더 모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 직장의 정년 연장도 지금 연장하려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아직은 신체적으로 힘이 있으신 분들이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이렇게 연령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져요.

지금 아마 소방청에서 반대한 이유가 연령이 70세까지 가게 되면 혹시 임무 중에 예상치 못한…… 신체에 어떤 조절이 잘 안 돼서, 신체가 좀 말을 잘 안 들어 가지고 몸이 다칠 수가 있다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안은 조례에 따라서,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해 보자는 겁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저도 그 부분은 제일 합리적인 안이라고 봅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법을 발의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소방청 입장, 마지막 입장입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가변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도농 지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방의 특수성을 좀 더 저희들이 수렴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번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제공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법안을 통과하는 데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또 왜 갑자기 바뀌어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아무래도 저희도……

죄송합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저기는 반대하고 우리 위원들이…… 좀 곤란한 점이 있을 거예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조금만……

양부남 위원님, 다음에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조금 양해를 해 주시지요.

○**양부남 위원** 뭐 그러시지요.

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지금 그 예산 문제는 가서 상의하나 마나예요. 상의하나 마나니까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거수해서 통과시키고 저기는 반대했다고 그렇게 하셔서 그것을 얘기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소위원장 서범수** 소방의 입장에서는 보면 그런 절차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도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아마 한 번도 안 거친 것 같아요, 소방이. 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내라', 한 번도 안 거친 것 같아.

안 거쳤지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각 시도 본부에서……

○**소위원장 서범수** 본부는 했겠지.

아니, 그게 아니고 본부에서 이거 돈 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야 되는 건데.

○**소방청차장 이영팔** 원래는 시도 본부에서 도의 정책 부서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하고 시도 소방본부는 시도에 있는 본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덕흠 위원** 아니, 그냥 통과시켜요.

○**양부남 위원** 통과시킵시다.

○**박덕흠 위원** 민주당 잘 통과시키잖아. 그러니까 통과시키면 되지.

왜냐하면 그래야만 저쪽에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아요, 이게.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정년 연장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정년 연장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리고 그것은 다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가끔 관련돼서 그러면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고 싶어서……

이게 이렇게 양적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질적인 강화 방안까지도 장기적으로 소방에서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박덕흠 위원님 통과를 시키자고 하셔서……

의사일정 제21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2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심사보고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고동진·김태년·서범수 의원안입니다.

고동진 의원안은 대통령령에 의한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태년 의원안은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범수 의원안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강화된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사회취약계층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취약계층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취약계층은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안전취약계층과 그 범위가 유사하고 화재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는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법에는 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들은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에 이미 건축이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도 일정 기간 안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체계를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 별표2 및 별표4에서 각각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서는 화재 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대상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화재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긍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별표2와 별표4 법령을 통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숙박시설은 아니지만

대략 20% 정도가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이거를 숙박시설로 확대하는 경우에 그 20%까지 포함해서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럴 경우에 약 2조 2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해당 시설 관계자의 자부담 비용 발생 시에 이에 대한 관계자의 수용 가능성의 정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7페이지의 개정안들의 내용 비교를 보시면요. 각각의 개정안들은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대해서 고동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 등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김태년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안은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여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로는 고동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김태년 의원안, 서범수 의원안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치 비용과 관련해서는 공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서범수 의원안의 경우에는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 기한을 다 규정하고 있는데요, 강화된 소방시설의 기준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기한으로 고동진 의원안은 2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김태년 의원안은 시행 후 2년 이내, 서범수 의원안은 시행 후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칙의 경과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뒤의 다변에, 24페이지에 서범수 의원안이 있는데요.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변경 시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소급해서 강화된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함께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24페이지의 서범수 의원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화재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소방시설 및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때에는 기존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설치 비용 및 설치 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장 이영팔** 먼저 사회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 취약자에 대한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에 관련하여서 금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관계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번에 숙박시설 등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근거 마련입니다.

스프링클러설비는 시스템계 소화 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계 소화 설비는 배관, 배선 그다음에는 수조 등 큰 장치와 그다음에 설비가 건물 내부에 인입돼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꽤 까다로우면서도 또 각 실마다 다 내부 인테리어나 천장이나 반자 그런 부분들은 배관을 넣기 위해서는 제거를 하고 새로 설치하고 다시 또 구축해야 되는 그런 까다로움이 시스템계 소화설비의 단점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새롭게 신설되는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넣는 거는 저희들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관, 여인숙, 호텔 이런 기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숙박시설에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부분들은 관계인의 협조 그다음에 그 비용과 관련해서 협의한 사항 그다음에는 영업상의 어떤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건축기술상의 여러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법안 내용 전에 좀 일반적인 궁금증인데 저희가 안전 투자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것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런 안전 눈높이가 생기기 전에 생긴 건물들에 설치하는 부담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근데 이런 건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도 안전 기준을 계속 눈높이에 맞춰서 강화시켜 나가면서 기존의 안전 기준에 맞지 않았던 건물들을 어떻게 다를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은 동일하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밑그림 위에서 이걸 좀 보고 싶은데 혹시 제가 질문드리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고시원이나 병원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를 소급 적용한 예가 있었습니다. 밀양병원 화재라든지 이런 건축물들, 하지만 고시원이나 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 고시원 같은 경우 사회취약계층의 숙박 개념으로 거주 형태로 하는 고시원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예산을 넣거나 또는 관계인의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일단 스프링클러를 넣거나 그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는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 공공시설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영리 목적의 일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만일에 이걸 소급 적용한다 그러면 이를 집행해야 되는 우리 소방청 입장에서는 관계인이 ‘나는 예산을 매칭을 해 주게 되면 내가 영업을 한 한 달 또는 두 달 동안 정지를 하면서라도 우리 숙박시설에 우리 여인숙에 스프링클러를 넣겠습니다’라는 협의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꽤 어렵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추계로 한 2조 2000억 원 정도로 전국에 있는 한 2만 8000여 개 숙박시설에 만일 스프링클러를 넣는다면, 비용을 뽑아 놨는데 이 비용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건축물 안에 벽체 내에 배관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배선도 들어가야 되고 천장 부분의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을 철거를 하고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은 사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숙박시설에 있는 관계인들은 그런 비용까지 지원이 안 되고, 사실은 인테리어 비용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설치 비용보다는 두세 배가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지원이 없는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설치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취지와 의미에는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집행력을 담보하는 데 많은 행정력부터 시작해서 좀 곤란한, 곤란하기보다는 좀…… 그런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법을 통과시켜 놓고 하면 이게 과태료를 먹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고쳐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이런 건은 어떻게 다뤄 나가야 됩니까?

○소방청차장 이영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코보스호텔 화재 이후에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새로운 소방시설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관리 방식을 좀 더 강화하자라는 방식으로 해서 안전관리자가 24시간 있도록 하고 만일에 안전관리자가 떠난다면 다른 안전관리보조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어떤, 지금 새로운 소방시설을 넣는다는 것보다는 관리 방식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저는 질문 다 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숙박시설이 우리 생각과 달리 건물주는 따로 있고 그 건물을 임대해서 숙박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누가 댈 것이냐부터 복잡해지는 데다가……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맞습니다. 그런 영업상의 소유권과 관련한 사항, 관리권과 관련한 사항들도 지금 꽤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성희 위원 저희가 안전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자영업으로 숙박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몇 퍼센트인지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영업 중단하고 폐업하고 다른 데 가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거지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고시원 추진할 때 사실은 약 한 20%가 새로운 어떤…… 소급하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영업을 폐업하고 이렇게 바뀌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너무 간단하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스프링클러 외에 다른 소방기기를 설치한다든지…… 관리인을 둔다, 24시간 한다 이것은 선언만 그렇게 시켜 놓고 나중에 불이 나고

나면 ‘당신들 관리를 똑바로 안 했네’라고 문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불이 안 나게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지금 부처에서 갖고 계시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 소방청도 돈이 없고 당신들도 낼 돈이 없고 영업하는 사람들도 설치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것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소방청이 갖고 있는 ‘이렇게라도 하자’라는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소방청차장 이영팔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숙박시설 내에 방염테이프를 비치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간이완강기에서 항상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완강기를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열몇 가지 사항들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고 있고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거기는 기존 소방시설, 피난설비를 좀 더 강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령을 개정하여서 강화된…… 간단하게 돼 있고 또 어떤 시스템적인 장치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단품설비이기 때문에 약간 관계인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좀 더 강화된 소방 대책이……

○김성희 위원 그렇게 해서 영업주들에게 부담을 시켜서라도 소방 대책을 강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참 어려운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숙박업소라든지 고시촌이나 이런 데 불이 나면 늘상 언론에 나는 이야기들이 딱 18번이 있잖아요.

‘이 건물은 몇 년도에 건축을 해서,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되기 전에 건축이 되어서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딱 숙박업소라든지 아니면 고시촌에 불이 나면 18번처럼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좋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또 소유주와 운영자 간에 다른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종합적으로 이게, 말씀만 그러실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한번 다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지금 위원장님 주신 말씀에 이어서 이런 것을 시도할 때 혁신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이……

생각보다 벤처기업들이 이런 것을 많이 다뤄요. 스프링클러가 아닌 센서 방식으로 돌파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을 스프링클러라는 것을 딱 정해 놓고 하면 제가 볼 때 답이 안 나올 거고. 안전기준에 맞춰서……

결국은 불 안 나게 하거나 조기에 진화하거나 이 목적 아닙니까?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라는 아이디어를 짹 받는다든지 벤처기업들한테 한번 공모를 걸어 놓고 챌린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꼭 돌파 방안을 찾아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합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위원장님이 발의한 법안 중에서 지금 소급 적용할 때도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예,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똑같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예, 똑같은 말입니다.

○**양부남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현재 숙박시설과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소유자는 임차인이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는 영업 손실과 여러 가지 부대적 손실이 있으니까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더러는 그러한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대비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한다니까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 자체가 없다면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사실은 이게 타임 레그(time leg)가 있어서 그런데 큰 대형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이런 법안들을 내거든요. 그러면 바로 토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또 타임 레그가 한 1년쯤, 그때 그 일을 까먹고 새롭게 이것을 검토를 해 보면 그때 상황하고 또 다르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라서……

일단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보류를 좀 시키겠습니다. 보류를 시킬 테니 소방청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상황을 보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소방에 대한,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가 봐서 안전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돈 안들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인식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도 개정하고자 하는 법과 거의 동등한 수준 아니면 그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두텁게 지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지원한 내용들을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 이영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 한 가지만 질문 좀……

○**소위원장 서범수** 예.

○**박정현 위원** 여기 12쪽에 보면 지금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건물 수가 2만 8000개라는 건가요? 그런데 그중에 11층 이상 숙박시설이 2700개라는 건가요? 전체 소급 대상 숙박시설이 2만 8000개인데 지금 대상이 11층 이상 숙박시설만 스프링클러를 새로 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소방청차장 이영팔** 전체 2만 8000개의 숙박시설이 있는데 만일에 소급하게 되면 2700개, 약 한 10% 정도는 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지금 한 10% 정도가 설치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80%는……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만일에 소급한다면 넣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 지금 2조 2500억 원은 그러면 2만 5000개를 한꺼번에 다 했을 때 이 돈이 든다는 거잖아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 법이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소방청차장 이영팔 소급하여 만일에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강행 규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박정현 위원 어차피 신청을 해야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숙박시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하고 신청을 해야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아닙니다. 그것은 비용의 어떤 방식에 대한 얘기고요. 만일에 지금 소급해서 법률에 의해서 기준에 있는 숙박시설에도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또는 ‘하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용의 조달 여부 방식과 상관없이, 신청을 하느냐 아니냐 없이 강행 규정으로 일단은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좀 소방시설 관행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습니까?

○양부남 위원 가항과 관련해서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설치 비용 지원에 있어서 현행의 법률로써 커버가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는데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안하고 현행법률 대상을.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그 지원 사례를 나열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 왔다, 그런데 개정법률안은 만약에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세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일단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소상하게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예, 그럼시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방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차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앙선관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허철훈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허철훈입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하여 심사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양부남 의원님과 신정훈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2건의 개정안은 입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전부 다 동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를 한 후에 중앙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2쪽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에 포함하고 선거기간과 선거일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먼저 신협 이사장·중앙회장 선거의 의무위탁 대상 포함 관련입니다.

2023년 7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신협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법률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이사장 선거기간 및 선거일 역시 신협 이사장 선거기간을 농협 등 기존 의무위탁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14일로 규정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동시이사장 선거일을 11월 두 번째 수요일로 정한 것은 신협 이사장의 임기 만료 일인 금년 11월 20일을 고려한 것이므로 기존 의무위탁 대상기관과 다르게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적용대상에 신협 이사장 등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의무위탁 대상기관과의 형평성 및 선거의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네 번째, 신협 이사장·중앙회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 등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 역시 현행 기준 의무위탁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13쪽, 투표안내문 발송기한 연장 관련입니다. 양부남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현행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에서 3일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 위탁선거법 제25조제3항은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3일 이내에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3조에는 이것이 2일 이내에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두 조항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16쪽, 위탁선거경비의 예산총계주의 적용 제외 및 결산 통제 강화 관련 사항입니다. 양부남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위탁선거경비를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먼저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해 왔는데요. 계속 저희 상임위원회 결산마다 심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3년도 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보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동 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지적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18쪽, 위탁선거경비 산출기준 국회 상임위 보고와 관련해서 현행은 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 등 외부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개정안은 이 산출기준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산출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를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23쪽, 위탁선거 운동 제한·중지 규정 신설입니다. 양부남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사퇴 등으로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위탁선거 운동을 중지하도록 하려는 규정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준용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6쪽, 인용조문 오류 정정입니다.

개정안은 제정 시에, 보시면 현행은 제66조제12호, 제66조제8호·제10호 이렇게 돼 있는 데요 이게 2항이 빠진 규정입니다. 그래서 입법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9쪽의 부칙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양부남 의원님은 공포한 날부터, 신정훈 의원님 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선관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예산총계주의 적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예결위 결산소위에 참석했을 때 기재부에서도 참석을 했었고 기재부에서 ‘위탁선거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국고에 귀속되면 남은 경비를 반환해 줘야 되는데 반환하는 것도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세입세출예산 내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 1년에 세입세출 외로 들어오는 위탁경비가 매해 다르겠지만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을 때 적을 때 등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조합장선거가 있고 또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있고 다른데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한 200억 정도 됐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많이 들어오는 해는 1000억도 넘게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조합장선거 같은 경우에는 조합 수가 1300개가 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금액이 좀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려면 들어오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일단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위탁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저희한테 납입하면 저희가 선거 관리에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은 정산을 해서 다시 위탁단체에 반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외로 다루는 항목들이 국가재정법에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건 검토해 보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산림청 같은 경우에, 산림보전법의 녹색자금 같은 경우에 세입세출 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예산총계주의 적용 예외로서 수입대체 경비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외교부에서 여권을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중앙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서 교육을 시켜 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입대체경비로 다루겠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아닙니다. 수입대체경비는 성격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기를 수입대체경비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권발급 수수료라든지 시험응시 수수료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위탁선거 관리경비는 선거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경비지 선관위가 용역을 제공하고서 받는 어떤 대가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대체 성격에는 맞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저는 좀 이상한 게 선거 관리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렇게 치환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국가재정법에 세입세출로 다루는 게 있고 세입세출 외로 다루는 방식이 있는데 아예 국가재정법 밖에서 다루겠다는 뜻으로 들려서 저는 그 부분은 좀 불편하고.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세출 외로 다루면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세입세출 외를 다

루는 방식, 즉 수입대체경비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계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탁선거는 공직선거하고 달리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부분, 그다음에 공직선거는 모든 것이 법에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위탁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하고 위탁단체가 협의해서 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위탁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위탁단체가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위탁선거 특성이 있고 또 위탁선거 경비도 세입세출예산은 세입 부담자, 지출 수익자가 매칭이 되지 않지만 위탁선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위탁단체가 수익을 받기 때문에 세입자와 수익자가 매칭된다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선거의 경우는 공직선거와 달리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좀 존중해 줘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농수축협 관계자들 의견을 저희가 수렴했는데요, 농수축협에서 위탁선거 관리경비는 실비·변상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입세출예산 외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대체경비로 사용하지 않지만 국가 예산총계주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산림청 녹색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제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세입세출 외로 다뤄야 되는 현실성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전형적인 수입대체경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국가재정법 밖에서 공적회계를 다루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계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권이라든지 말씀하신 녹색자금도 국가재정법 내에 있는 겁니다. 총계주의 밖에 있고. 그런데 선관위 같은 경우는 국가재정법 밖으로 적용하는 루트를 지금 하나 만드는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 국법체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대 의견 내겠고, 이걸 방해하겠다는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우리 법체계를 잘 해야 되고.

특히 선관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축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한 해에 일이 억 그런 것도 아니고 들어 보면 몇천억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이 회계가 어떻게 관리되느냐는 굉장히 부담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틀 내에서 다룰 수 있는 총계주의 밖, 그러나 국가재정법 내에서 다룰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오셔야 저는 검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분들……

그런데 이게 위탁선거 관리를 꼭 해야 됩니까, 우리 선관위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원합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저희는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입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조합장선거가 과열, 혼탁해진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공직선거가 깨끗해지려면, 공직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려면 생활 주변 선거가 정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2004년 그때 법에 도입이 돼서……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본업부터 챙겨라. 공직선거 관리부터 철저히 하고 다른 영역을 넓혀 가야 되지. 본업은 지금 부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명심할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툭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선거할 때 부실한 관리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더 채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영역을 넓혀서 여기까지 넓혀 가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본업은 잘 못하면서 자꾸 다른 영역으로 넓혀요? 거기에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진짜 공직선거, 대통령, 총선, 지방선거. 곧 내년에 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별생각 안 하고. 몰라, 돈 되는 건 아니겠지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저희가 원해서 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선거가 깨끗해지려면 생활 주변 선거가 좀 정화돼야 된다고, 그러한 명분 때문에 법정화가 됐고 법에 의무위탁선거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하게 되었다는 점이……

○**소위원장 서범수** 예를 들면 이 선거도 중앙선관위 직원만 동원이 됩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동원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위탁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 선관위 직원하고 위탁단체 임직원들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양부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에서 이루어지는 선거 관리에 대해서 우려하고 염려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입법 개정안은 그와 연동시킬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을 위탁선거법과 일치시키는, 반영하는 차원의 문제니까 그 점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맞다, 양부남 의원님이 내셨지요?

○**양부남 위원** 예.

○**박덕흠 위원** 지금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농협하고 새마을?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박덕흠 위원** 그 2개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어디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국립대학교총장선거도 저희가 의무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박덕흠 위원** 국립대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박덕흠 위원**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아까 말씀드린 농수축협, 산림조합.

○**소위원장 서범수** 국립대학교총장도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예, 40개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생활체육회장선거도 저희가 의무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2페이지 자료에 보면 거기 안 나왔는데요?

○**박덕흠 위원** 생활체육회장선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예.

○**박덕흠 위원** 그러면 체육회장선거 위탁비용은 기초단체에서 받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아닙니다. 그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위탁을 의뢰한 단체가 부담합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일단 생활체육회야 어쨌든 기초단체 소속으로 되는 것 아닌가? 따로 그 예산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생활체육회장은 시군 단위에도 다 있잖아요. 중앙회장선거 얘기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아닙니다. 시도생활체육회장, 구시군생활체육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예.

○**박덕흠 위원** 그러면 지금 신협만 빠져 있는 거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의무위탁으로 개정이 됐는데 위탁선거법에 이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번 12월 달에 신협중앙회장 임기가 만료돼서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꼭 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역에서, 시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군 단위는 농협, 새마을, 농축협선거가 선거 풍토를 다 버려 놓는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신협 같은 경우에도 같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위탁선거를 해서 좀 공명한 선거를 하게끔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나마 옛날같이 혼탁한 게 좀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좀 혼탁하지만…… 그래 가지고 선거할 때 보면 농축협, 농협, 새마을 이런 선거 할 때 선거 풍토를 다 버려 놓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혼탁한 선거가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더 세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조사, 단속 방안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것이 공명선거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협도 같이 위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여간 관리하는 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릴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개정법안은 어쨌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해서 연동이 돼서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통과시키고요. 다만 이게 지금 쟁점이 있는 게 외부 선거에 대한 위탁 기능을 선관위가 하냐 마냐 이것은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은 통과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에 또 논의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소위원장 서범수**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저는 지지합니다. 이 법을 지지하는데, 아마 세입세출 외로 다루는 거에 대한 통제를 가미하는 거로 보여서 저는 지지를 하는데……

그런데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에 두 가지 종류의 회계가 있습니다. 민간의 회계는 공인회계사협회 기준에 따라서 다 정산을 하고 매출 규모에 따라서 1000억 이상 상장회사, 사후 보고나 통제 장치가 조금 다를 뿐이고 그렇게 해서 민간 자금은 하는 것이고 공공 자금은 국가재정법에 있는 회계 방식에 따라서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방식은 제가 아는 한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국가재정법의 세입세출 외로 다루는 방식이 제가 듣기에는 수입대체경비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그걸로 다루면, 그러니까 세입세출 외로, 밖으로 다루고 상임위 보고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아야 될 때 어떤 조항에 따라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검토가 지금 없어서 저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

이 법 개정을 통과시키면 국가재정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할 건지, 국가재정법이 아니면 공인회계사법 기준에 따라서 회계를 하겠다는 건지,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공공기관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마 회계감사는 다 감사원 감사를 받으니까 회계를 정리하는 기술 방식에 있어서 세입세출 외로 다뤄야 되고 상임위 보고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회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국가재정법의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세입세출 외의, 밖의 방식이 있고 저는 수입대체경비랑 가깝게 들리는데 제가 즉각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걸 100%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대조건을 다는 방식이 있다든지 국가재정법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면, 양해를 해 주시면 다른 거는 통과시키고 이 부분은 보류를 해서 다음 소위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재정법 관련 심도 있게 검토도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양 위원님.

○**양부남 위원** 금년 11월 셋째 주에 신협 이사장들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2월 달에는 중앙회장 선거가 있지요. 그래서 이게 위탁선거가 되려면 법이 빨리 통과가 돼서……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그것 다음에 할 테니, 분명히 그것은 시간에 맞춰서 저희

들이 할 테니……

○양부남 위원 예, 그게 지장이 없다면……

○소위원장 서범수 선관위에서 다시 검토를 해 오세요, 이 항목에 대해서.

○박수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기재부나 감사원과 상의하면 하루이틀이면 답 나옵니다. 오래 걸리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 지금까지 아마 회계처리는 다 해 오셨을 거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박수민 위원 세입세출 외로 해 오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 보고라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법 적용 공백 상태에 있다가 집어넣는 건데 법 적용이 들어갈 때는 국가재정법의 틀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거기에 선택지들이 있을 것이고 선택지가 진짜로 없다, 이것은 정말 특수한 방식이라서 국가재정법의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할 조항이 없더라면 이렇게 되면 그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게 비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법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은 했지만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행안위에 매년 4월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집행내역을 위탁단체에 통지하고 구성원에 다 공개를 해서 위탁선거 관리경비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다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소위 때 하고 나머지는 통과시키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 대신에 한 가지 더 말씀, 아까 박덕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왕에 위탁선거 관리를 하려면 중앙선관위에서 좀 타이트하게 해 주시라. 공직선거법처럼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라. 예를 들면 농협이나 수협이나 새마을, 운영하는 그것만 선거 관리를 하지 그와 관련한 선거운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잘 안 하시지요? 터치를 안 하지요?

우리 지역에 내려가면, 아까 박덕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선거 풍토를 고치기 위해서는 농협조합장 선거를 제일 깨끗하게 치러야 된다 이게 지금 밑바탕이 되니까 선거 자체가 공직선거도 흐려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선거 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원래 우리가 논의하려고 했었던 법안 중에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들 중에 시각장애인들 외의 다양한 장애인들의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들이 올라올 예정이었는데요. 서미화 의원님과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각장애인 있는 건 아니고 발달장애인이나 다양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선거

에 관한 정보를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같은 취지의 법안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것 빠졌다 말씀이시지요?

○용혜인 위원 의안 번호 2209350인데요.

○소위원장 서범수 다음에는 같이 올리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다음번에 우리가 이 논의 한다면 제 법안도 같이 상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예,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관위 많이 기다리셨는데 우리가 오늘 시간 약속을 5시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음에는 선관위를 1번으로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것으로 제2소위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사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선관위 공무원들도 고생하셨습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권칠승 김성희 박덕흠 박수민 박정현 서범수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주호영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경찰청

차장 유재성

국제협력관 이준형

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소방청

차장 이영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허철훈